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농어업체험사업 지원 대상에 ‘학교 밖 청소년’ 포함〉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3429호)

2025. 11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정은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※ 참고자료	6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부 제출
2. 발 의 일 : 2025. 10. 1.
3. 회 부 일 : 2025. 10. 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농어업체험사업의 실시 대상에 학생 외에 ‘학교 밖 청소년’을 추가하고, 예산 지원 대상에 학교뿐만 아니라 ‘청소년단체’도 포함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1조(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학생</u>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제11조(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) ① ----- <u>학생, 학교 밖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<u>학교와</u>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학교, 청소년단체(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)</u> 및 ----.
	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농어업체험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정책 대상을 ‘학생’ 및 ‘학교’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.¹⁾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란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,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하며, 2023년 기준 16만 6,500여 명으로 청소년 인구(6~17세) 대비 약 3.0%로 추정됨.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²⁾

1) 법제처 보도자료,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, 2025. 9. 30.

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‘학교 밖 청소년’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‘청소년단체’를 비용 지원 대상에 명시하려는 취지임.³⁾

현행 「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」은 ‘학생 및 일반인’에 대해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‘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님.

그러나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라는 취약 계층을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.

또한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4)에 따른 ‘청소년단체’는 **청소년 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**를 의미하는

2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3) 참고자료: 동일 취지 정부 제출안(9건)

4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8. “청소년단체”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(청소년단체의 범위)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**청소년 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**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데, ‘청소년활동’에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·교류 활동·문화활동 등이 포함된다는 점(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5호)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기에 적절한 성격을 갖춘 것으로 보임.

참고로, 현행 법률 중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3조에 학교와 청소년단체, 학생과 청소년(학교 밖 청소년 포함)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.

[유사 입법례: 문화예술진흥법]

제13조(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·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·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직원,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·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·청소년·직원,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문 의 처

02)6788-5414

참 고

학교 밖 청소년 차별 완화를 위한 법률 정비

연번	소관 부처	정비대상 법률		정비 내용
1	농림축산 식품부, 해양수산부	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	제11조 제1항· 제2항	(제1항)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 (제2항)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학교 등 뿐만 아니라 ‘청소년단체’에도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2	농림축산 식품부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	제53조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농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3	농림축산 식품부	동물보호법	제4조제4항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동물보호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4	특허청	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	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과 같이 발명교육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5	특허청	발명진흥법	제6조제2호, 제27조제2항, 제55조제3항 제7호	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과 같이 발명교육 경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6	산업통상 자원부	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	제24조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7	해양수산부	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	제38조제1항 제3호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어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.
8	산림청	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	제4조제2항 제6호가목	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.
9	과학기술 정보통신부	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	제21조제3호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
자료: 법제처